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4

발의연월일: 2016. 8. 9.

발 의 자 : 윤종오 · 김경진 · 안민석

김종훈 · 서영교 · 조정식

강병원 • 유은혜 • 노회찬

이용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이 자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직장폐쇄 이후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 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 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직 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 가하며, 그 준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 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그 개념을 별도로 정의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나. 직장폐쇄의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 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 또는 장비를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를 "'쟁의행위"란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의5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爭議行爲"를 "쟁의행위 등"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職場閉鎖의 요건)"을 "(직장폐쇄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폐쇄를 할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

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직장폐쇄 중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 또는 장비를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91조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폐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장폐쇄 중인 사용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u>	6. <u>"쟁의행위"란 파업이나 태</u>
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업, 그 밖에 노동조합이 그
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	<u>는 행위로서 업무</u>
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	
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	
는 행위를 말한다.	
<u><신 설></u>	7.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를 말한다.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
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	일화 관련 사항)
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제4항, 제30조, 제3	
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2조	
의6제1항, 제44조제2항, <u>제46조</u>	제46조
<u>제1항</u> , 제55조제3항, 제72조제3	<u>제1항·제3항·제5항</u>
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	
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第4章 爭議行為 第46條(職場閉鎖의 요건) ①使用 第46條(직장폐쇄의 요건 등) ① 者는 勞動組合이 爭議行爲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 제91조(벌칙) ------

第4章 쟁의행위 등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開始한 이후에만 職場閉鎖를 를 개시한 경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폐 쇄를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 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 장 내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④ 사용자는 직장폐쇄 중 사업 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 또는 장비를 배치 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 력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 쇄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 다.

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 항 본문, <u>제46조제1항</u> 또는 제6 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46</u> 조제1항·제3항·제4
<u>항·제5항</u>